

## II.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 현황 및 문제점

### 1. 해외 현황 및 추세

최근 조사된 외국의 지급보증기구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이순재외(2005)). 기업연금제도는 그 나라의 노사관계,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와 밀접히 연관되어 운영되는 특성을 갖는다. 예컨대 캐나다의 경우 온타리오주에서만 지급보증기구가 운영되는데, 온타리오 주는 캐나다의 중공업 핵심 지역이며, 많은 중공업 관련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정치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1980년에 지급보증기구를 설립하였다. 이는 미국의 PBGC가 성숙기에 접어든 중공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1974년에 설립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즉, 정치적,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을 갖고 있기에 지급보증기구의 운영도 국가별로 상이한 특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증기구가 적용하는 보험요율의 형태로 고정요율제를 운영하는 경우는 이제는 관찰되지 않는다.

보험요율의 변천으로 좋은 예는 미국의 PBGC이다. 제IV장에서 자세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PBGC의 보험료는 최초 설립 시 가입자 1인당 1달러의 고정요율제였고 그 후 수차례 인상되어왔지만, 지금은 고정보험료와 변동보험료로 구성된다. 고정보험료는 1991년부터 가입자 1인당 연간 \$19달러를 유지해오다 2006년 연금개혁법안의 통과로 연간 \$30로 인상되었다. 변동보험료는 개별 퇴직연금기금의 미적립연금부채를 계산하여 \$1,000당 연간 \$9를 1998년부터 적용하여 오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볼 때, 보험요율의 설정 시 리스크를 감안한 요율(risk-based premium)을 책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PPF를 도입한 영국의 경우 리스크를 반영한 보험료의 비중이 적어도 80% 이상 되도록 연금법(2004)에 규정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lt;표 II-1&gt; 외국의 지급보증기구

국 가 (운영주체)	가입 대상	지급보장 형태 및 금액(최대)	보험료	재정 상태
미국 (PBGC, 국영)	DB 근로자 (4.4천만명)	Take-over, 연 \$47,659.08 (65세)	- 고정보험료(1인당 \$30) + 변동보험료 (미적립 연금 부채 \$1,000 당 \$9) (복수기업주플랜: 1인당 \$8.0)	2001년 \$77억 잉여금 발생 이후, 2004년 \$230억 자본잠식
영국 (PPF, 국영)	DB 근로자 (약 1천만명)	Take-over, 연 £26,050	- 고정요율 + 리스크비례 요율 (리스크비례요율은 전체 요율의 최소 80%)	
캐나다 (PBGF, 국영)	DB 근로자 (약 1백만명)	Cash-out, 연 C\$12,000 (인플레이션 미연동)	- 가입자 수 및 미적립금액 기준(미국과 동일)	2004. 3월 현재 C\$1.7억 자본잠식
일본 (후생연금 기금연합 회, 민영)	후생연금기금 의 후생연금 (국민연금) 대행부분 (약 1.2천만명)	Take-over, 대행부분의 급부현가의 30% +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50%	- 인수비례부분: 가입원 수에 비례 - 수익비례부분: 지급보증한도액의 0.119% - 적립부족비례부분: 미적립채무액의 0.352%	300억엔 상당의 준비금 적립
스웨덴 (Pensionsg aranti, 민영)	DB 사무직 근로자 (약 20만명)	Buy-out, 연금액 전액	- 연금부채액에 비례(0.3%) - 연금부채의 펀드 투자시 0.1% 할인	2003년말 현재, \$170억 상당의 적립금 유지
독일 (PSVaG, 민영)	DB 근로자 (약 8백만명)	Buy-out, 연 28,900 유로	- 연금부채 + 과거경험 base - 전년도 추정손실이 반영	매년 보험료 재조정으로 건전성 유지
스위스 (BVG, 국영)	DB, DC 근로자 (약 3백만명)	Buy-out, 100% 정부의 최저급부 보장, 사회보장소득의 1.5배 한도	- 연금부채에 비례 - .04%*(연금부채+지급연금의 10배) + 추가보험료(법정 최소 급부액의 0.06%)	1990년대 초 \$2.2억 상당 적립금이 2003년, \$14백만까지 소진

자료 : 이순재, 김재현, 이봉주, 김현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사후적 수  
급권 보장 방안,” 사회보장연구 제21권 제4호, p.110 수정

## 2. 문제점

미국의 PBGC는 델파이, 델타항공, 노스웨스트항공의 파산 신청으로 그 적자 규모가 더욱 확대되게 되어 2004 회계년도의 경우 적자 규모가 약 230억 달러에 달하였다. PBGC는 창립부터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어 왔으며, 철강, 항공, 자동차산업의 고전과 정치적 이유로 보험료를 적절히 인상치 못함에 따라 상당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PBGC의 잠재적 적자 규모는 너무나 커서 1980년대 말 및 90년대 초 미국의 금융위기를 촉발한 저축대부조합(S&L) 파산 사태에 비유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또 PBGC가 2021년에 자금 고갈되는 상태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920억달러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2006년 연금보호법을 제정하게 된 주요 동기 중의 하나이다.

한편 국가가 보험을 제공하는 제도인 PBGC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 바 있다. 재무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급여를 인상하거나 낙관적인 계산기초율을 사용하여 기업의 부담금을 낮추는 행위 등이 그 예이다. 최근의 예를 들면, 2002년 3월 유나이티드항공(UA)은 이미 25% 과소적립된 연금제도에도 불구하고 지상근무인력들에 대한 연금지급액을 45% 인상시킨 바 있고, 9개월 후 파산을 신청함에 따라 PBGC는 결국 66억달러의 부담을 추가로 떠맡게 되었다. 한편 의류제조업체인 웨스트포인트 스티븐스사 (Westpoint Stevens Corp.)는 2002년에 이미 정크본드의 등급이었으며 연금제도에 대한 회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기금 자산의 연간운용수익률을 9%로 책정하였는데, 이는 이 당시 워렌버핏의 버크셔헤이서웨이가 설정한 예정이율 6.5%에 비하면 너무 높게 설정한 것이다.

한편 영국의 경우 개정된 연금법에 의해 2005년부터 PPF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PPF가 파산에 직면할 경우 정부 재정에서 전혀 지원이 없을 것으로 공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러나 과연 정부가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정치적으로 회피할 수 있을 것이냐는 별 문제라 하겠다. 어쨌든 이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PPF가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거두어들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PPF의 경우 80% 이상 보험료를 기업의 재무상태에 연동하여 거두어들이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게 할 수 있는가가 또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